

2012. 9. 19.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안 건 명	비 고
1428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중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29	충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1430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31	충주시 촉탁 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365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안 건 명	제 안 일 자	회 부 일 자	상 정 일 자	의 결 일 자	제안설명	비고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 9.10.	2012. 9.10.	2012. 9.18.	2012. 9.18.	기업지원과장	
충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2012. 9.10.	2012. 9.10.	2012. 9.18.	2012. 9.18.	재난관리과장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 9.10.	2012. 9.10.	2012. 9.18.	2012. 9.18.	상수도과장	
충주시 촉탁 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2012. 9.10.	2012. 9.10.	2012. 9.18.	2012. 9.18.	보건위생과장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 3.5.	2012. 3.5.	2012. 3.8.9.18	2012. 9.18.	교통과장	

2. 제안설명요지

①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올 11월 준공예정으로 있어 기업도시에서 발생되는 공장폐수, 오수 등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충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3]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을 확대하고 기숙사, 사회 복지시설 등의 사용량 인정 시 급수업종을 한정하여 수혜자를 명확히 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상수도 급수공사비를 지원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임.

[4] 충주시 촉탁 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상위법인 「의료법」에서 촉탁의료인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임.

[5]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여 장기주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조례 제명 변경

-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나. 적용범위에 충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추가함.

(안 제2조 제2호)

다. 처리시설 기준항목에 생태독성(TU) 추가(안 제11조 제7호)

[2] 충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가.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안 제3조)

- 회장 : 부시장, 회원 20인 이내로 구성

나.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기능(안 제5조)

[3]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등록된 자로 확대 (안 제10조 제1항)

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상수도 급수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4조 제5항)

다.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의 사용량 인정 시 급수업종을 단일화(안 제31조 제3항)

④ 충주시 촉탁 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가. 「충주시 촉탁 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

⑤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감면대상을 규정함
(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나. 교현천, 충의, 금릉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함
(안 제3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 비교의 제4호 나목)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①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개정조례안은 충주기업도시에서 발생되는 공장폐수, 오수 등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조례 제정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성격 및 내용이 유사한 기존 조례에 조례 제명 및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활용하려 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 사항이라고 판단됨.

이번 방류수 수질기준 개정에 포함된 생태독성제도는 생물체(물벼룩)를 이용한 수질검사 방법으로 기존 BOD, COD와 같은 검사로는 알 수 없었던 미지의 유해물질에 대해 독성에 민감한 물벼룩을 이용하여 독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한 수질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항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에 생태독성을 추가한 것은 수질방류 기준을 강화하려는 아주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사료됨.

② 충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필요시 자연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충주시를 비롯한 충북도내 12개 전 시·군에서는 상기 규정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2012년도 정부합동감사’ 시지적(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2310(2012.6.12)) 을 받은 바 있음.

금번 제정조례안은 정부합동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조례 제정사항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조례안 내용 역시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③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의 사용량 인정 시 급수업종을 한정하여 수혜자를 명확히 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상수도 급수공사를 지원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개정안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상수도 급수공사비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수처분을 6개월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긍정적 사항이라고 판단됨.

둘째,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건물의 수도요금 산정 시 급수업종을 한정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용 업종은 종전대로 혜택을 받으며 업소 등 일반용 업종이 수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사료됨.

셋째,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 : 8업체('12. 9월 현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소지 : 44업체(")

④ 충주시 촉탁 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지난 2000년 1월 「의료법」에서 촉탁의료인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폐지가 다소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사료됨.

⑤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현재 무료로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위탁료 감면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위탁 및 위탁료 감면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의한 사항으로 언급을 생략하도록 하고 주요 사항인 공영주차장의 유료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음.

교현천, 충의, 금릉공영주차장은 지난 2010년 10월 재래시장 및 인근 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운영되고 있음.(제148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 가결)

주차장 무료화, 유료화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는 당시 제 148회 임시회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되었던 사항으로 언급은 생략하도록 하겠음.

다만, 심사착안 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라 인력의 추가 채용, 장비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과다한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는지?, 유료화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및 불만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①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질의 : 생태독성 시험결과 독성이 발생했을 경우?

답변 : 관련법에 의한 사항으로 원인 파악하여 조치

(2) 질의 : 용탄, 목행 등 산업, 농공단지 폐수처리는?

답변 :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연결되어 처리됨.

(3) 질의 : 생태독성을 시험할 수 있는 생물의 종류를 더 확대하여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답변 : 필요할 경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② 충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1) 질의 : 안 제3조와 관련한 방재관련 협회는 어떤 단체인가?

답변 : 방재협회, 전기관련 단체 등 전문기관임

(2) 질의 : 협의회가 2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답변 : 20개 단체임.

(3) 질의 : 농업분야는 해당이 되지 않고 토목쪽에만 치우쳐 있는 조례라 판단이 되는데?

답변 : 재해 발생과 관련한 원인 분석이 주된 사항임.

③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질의 : 급수공사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로 확대한 이유는?

답변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 권고한 사항임.

(2) 질의 :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낮아지나?

답변 : 업체가 확대되면 다소 낮아질 것으로 판단됨.

(3) 질의 : 광역상수도와 단월정수장을 일원화 하여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 :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곳은 전국 16개소임.
단가 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다시 시에서 관리하는 추세임.

(4) 질의 :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주한 경우 지원은?

답변 : 대상이 자가 소유 수급자로 이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함.

(5) 질의 :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영세민에 대한 지원은?

답변 :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검토하겠음.

[4] 충주시 촉탁 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질의 답변 없음.

[5]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질의 : 주변 상인들이 다시 무료화를 요구할 경우?

답변 : 시행 2년 동안 문제점이 도출된 바 무료화 의견이 있어도 무료화는 시행하지 않을 방침임

(2) 질의 : 유료화 할 경우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데?

답변 : 검토하겠음.

(3) 질의 : 위탁할 경우 위탁사용료는?

답변 : 80%까지 감면됨.

(4) 질의 : 유료 전환 시 주차장 인근에 불법 주정차가 성행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 : 주차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5) 질의 : 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차장 요금 감면 시
확인방법은? 자원봉사자증이 없음.

답변 : 확인 후 검토하겠음.

(6) 질의 : 공영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도난 방지 대책은?

답변 : 도난방지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음.

6. 심사결과

[1] 충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충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3]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충주시 촉탁 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5]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